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2108
------------	------

2021년 2월 25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이은주 의원 외 9인

나. 제안일자 : 2021년 1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1월 21일

라. 상정일자

○ 제299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2021년 2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은주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마스크

크 미착용 등 택시 내 위생, 방역과 관련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여객이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한 택시이용에 목적을 두고 있음

나. 주요골자

-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경우 하차하도록 할 수 있다. (안 제5조제5항)
- 시민은 전염병 예방 및 확산·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안 제6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기간 : 2021. 1. 26. ~ 2021. 2. 2.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

○ 제출의견 : 원안 가결

- 우리시는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1조(운송의 거절)에 택시 내에서 여객이 감염병 위기 정보에 따른 마스크 미착용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택시기사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본 조례개정안은 택시 내 방역지침 미준수 및 폭행 등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여객의 경우 승차거부를 할 수 있고, 여객은 전염병 차단을 위해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우리시 택시정책 기본방향에 부합하고 안전한 택시 운송을 위한 것으로 운수종사자와 시민의 의무사항으로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어 원안에 동의함

1) 택시물류과-4349호(2021.2.1.)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개인택시 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운송을 거부하거나 승차한 승객을 하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승객 협조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관련(안 제5조제5항)

- 동 개정조례안은 개인택시 여객이 안전을 위해하거나 방역에 피해를 줄 경우 및 폭행·협박으로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경우 등에 대해 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운송거부 또는 이미 승차한 여객을 하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교통수단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실정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년 8월 12일에 개정²⁾됨에 따라 서울시장은 마스크 착용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등의 방역지침 준수조치를 이미 시행하는 등 코로나19와 관련해 교통수단에 대한 방역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강화된 상태임

- 서울시 택시 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방역지침 강화 현실을 반영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³⁾ 및 시행규칙 제30조⁴⁾에 따라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을 변경하여⁵⁾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이미 마련한 바 있음⁶⁾

- 또한 '20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심판위원회⁷⁾에서는 “택시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3.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법률 제17475호, 2020. 8. 12, 일부개정, 시행>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운송약관)

①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약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의 운송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운송약관의 기재사항)

법 제9조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8.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변경승인 검토보고 : 택시물류과-23231호('20.6.10.)

6)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2조(운송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1. 법정 전염병환자가 승차하는 경우

2.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0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명시된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5. 폭발성물질, 부식성물질, 인화성물질 등 위험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6. 시체 및 동물(사업자 또는 다음 승차할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 다만, 운반상자에 넣은 반려동물 및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맹인 인도견은 제외)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7. 불결, 악취 등으로 여객의 운송에 장애를 초래하는 물품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8. 기타 안전에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1급 감염병의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승객 갑질로 인한 승차거부는 정당하며 택시기사 권익도 보호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택시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운송거부와 여객하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택시의 특성과 선량한 택시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시민의 권리와 의무 관련(안 제6조제3항)

- 동 개정조례안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시민의 협조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 시민의 협조의무가 일부 규정되어 있고,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흡입량 감소되는 등⁸⁾ 최근의 코로나19 피해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협조가 절실하고, 이를 통해 택시 이용 승객의 편의 및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7)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 '20.10.13.

- 국민권익위, “택시 승객 갑질로 인한 승차거부는 정당” 행정심판 결정

- 중앙행정심위, 승객뿐만 아니라 택시기사 권익도 보호해야...

8) 마스크, 코로나 차단 효과 어느 정도?... 직접 실험해보니 : 한국경제('20.10.23.)

- 바이러스 흡입량 80~90% 줄일 수 있는 연구결과 보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경우 하차하도록 할 수 있다.

1. 택시 내의 위생,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르지 않는 행위
4.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민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 ④ (생략)</p> <p><u><신 설></u></p>	<p>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경우 하차하도록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택시 내의 위생,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u> 2. <u>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u> 3. <u>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르지 않는 행위</u> 4. <u>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u>
<p>제6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 ② (생략)</p>	<p>제6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 ② (현행과 같음)</p>

<신 설>

③ 시민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
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